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
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하부조직 및 학과·학부 설치의 자율적인 운영여건 조성을 위하여 과·담당관 및 행정실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, 그 설치범위를 국립대학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교수 중”을 “교수 또는 부교수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13개 이내의”를 “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2개의 범위에서”를 “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하부조직)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,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(補)하거나 <u>교수</u> 중에서 보하며,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.	제7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수 또는 부교수</u> <u>중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 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<u>13개 이내의</u> 과를 둔다.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제3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<u>2개의 범위에서</u> 행정실을 두고, 각 행정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	⑤ ----- ----- <u>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-----.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063 (044) 203 - 6919